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

[시행 2025. 5.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6호, 2025. 5. 1., 제정]

고용노동부(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2-72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유지조치"란 사업주가 영 제20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후 실시한 영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영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대규모기업"이란 제2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4. "특별재난지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재난으로 인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등)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2025년 3월 22일 선포된 경남 산청군, 같은 달 24일 선포된 울산 울주군·경북 의성군·경남 하동군, 같은 달 27일 선포된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등 8개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당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이하 "특별재난지역 사업주"라 한다)가 각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10분의 9
2.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3분의 2

제4조(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사업주가 각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자로 본다.

제5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25-26호,2025.5.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는 영 제20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해 조치한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도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무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한다.